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지도자 교육규정



제·개정연혁

- 2005년 1월 10일 제정
- 2009년 2월 18일 개정
- 2013년 1월 17일 개정
- 2014년 12월 29일 개정
- 2018년 5월 28일 개정
- 2018년 10월 16일 개정
- 2019년 12월 19일 개정
- 2021년 10월 5일 개정
- 2022년 12월 13일 개정
- 2024년 5월 28일 개정
- 2025년 1월 21일 개정
- 2026년 1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도자 및 지도자 강사의 교육, 자격증 발급 등 지도자의 양성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지도자, 지도자 강사, 지도자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6.01.27.>

제2장 지도자의 구분 및 교육

제3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협회가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1.27.>



제4조 (지도대상별 최소자격기준)

지도자가 협회에 등록된 팀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별표2와 같이 지도 대상별 최소자격기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제5조 (사전 교육)

각 급별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 참가를 희망하는 수강자는 교육 신청 이전에 협회가 지정하는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지도자 교육 신청 기본요건)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6.01.27.>
- ② 아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개정 2026.01.27.>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기타 세부 지도자 교육 신청요건은 각 급별 지도자 교육 신청요건을 따른다.

제7조 (KFA D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KFA D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 1. 교육 기간 : 4일 (20시간 기준)
- 2.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8조 (AFC C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C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요건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01.27.>
 - 가. D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C급 승급 응시자는 D급 A형 실기를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사람) <개정 2026.01.27.>
 - 나. 협회 전문 등록팀에서 5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기간 : 2주 (6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AFC 코칭컨벤션 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9조 (AFC B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B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 요건 : AFC C급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 가. [일반차수] AFC C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2년 이상 경과하고, 자격 취득 이후 6개월 이상의 지도경력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26.01.27.>
 - 나. [우대차수]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로서, 전 가목의 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 및 지도경력(6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1.27.>
 - 1) AFC C급 지도자 자격 평가에서 성적 우수자로 추천된 사람. <개정 2026.01.27.>
 - 2) 국내·외 프로리그(WK리그 포함)에서 50경기 이상 선수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대상자 선발
 - 가. 협회는 제1호의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서류 및 자격심사를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그 구체적인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협회의 별도 세칙에 의거한다.
 - 나. FC의 여성 지도자 우대 권고에 따라 각 교육 과정별 정원(24명 기준)의 2명 이내에서 여성 지도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여성 지도자 지원자가 선발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남자 지원자로 충원한다. <개정 2026.01.27.>
3. 교육 기간 : 3주(120시간 기준)
4. 자격 평가 내용 : AFC 코칭컨벤션 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0조 (AFC A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A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 요건 : AFC B급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7.>

가. [일반 차수] AFC B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2년 이상 경과하고, 자격 취득 이후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26.01.27.>

나. [우대 차수]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FC B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고, 자격 취득 이후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01.27.>

1) AFC B급 지도자 자격 평가에서 성적 우수자로 추천된 사람 <개정 2026.01.27.>

2) 국내·외 프로리그(WK리그 포함)에서 50경기 이상 선수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대상자 선발

가. 협회는 제1호의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서류 및 자격심사를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그 구체적인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협회의 별도 세칙에 의거한다.

나. AFC의 여성 지도자 우대 권고에 따라 각 교육 과정별 정원(24명 기준)의 2명 이내에서 여성 지도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여성 지도자 지원자가 선발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남자 지원자로 충원한다. <개정 2026.01.27.>

3. 교육 기간 : 4주(180시간 기준)

4. 자격 평가 내용 : AFC 코칭컨벤션 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1조 (AFC P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P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 요건

가. AFC A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3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A급 취득 이후 U-18팀 이상의 팀에서 1년 이상(1시즌 기준)의 지도경력을 보유한 사람 (KFA 정식



등록 지도경력에 한함) <개정 2026.01.27.>

나. P급 강습회 수강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3개월 이상의 징계 기록이 없는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대상자 선발:

가.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해 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는 위 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서류 및 자격심사를 통해 아래 심사항목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협회의 별도 세칙에 의거한다.

구분	심사내용	점수	비율
지도경력	지도경력을 시존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	최대 30점	30%
정성평가	유형1 감독의 리더십 및 역량 평가 유형2 축구 전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평가	최대 40점	40%
보수교육	최근 3년 기간 누적점수 적용	최대 20점	20%
가산항목	A급 성적우수자(강사 추천) 또는 최근 5년간 지도자 실적 적용	최대 10점	10%
합계		최대 100점	100%

3. 교육 기간 : 8주(360시간 기준)

4. 자격 평가 내용 : AFC 코칭컨벤션 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2조 (KFA GK C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KFA GK C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교육 기간 : 6일(40시간 기준)

2.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3조 (AFC GK B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GK B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 요건 : KFA GK C급 및 AFC C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KFA GK C급 지도자 자격 취득 이후 6개월 이상 지도경력을 보유한 사람. 단,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KFA GK C급 지도자 자격 취득 이후 경



과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가. KFA GK C급 지도자 자격 평가에서 성적 우수자

나. 국내외 프로리그(WK리그 포함)에서 50경기 이상 출전자로서 세부내용은 관련 세칙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2. 교육 기간 : 7일(6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4조 (AFC GK A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부여)

AFC GK A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 요건 : AFC GK B급 및 AFC B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AFC GK B급 지도자 자격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도경력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기간 : 10일(12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5조 (KFA 풋살 D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KFA 풋살 D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교육기간 : 3일(20시간 기준)

2.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6조 (AFC 풋살 Level 1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풋살 Level 1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요건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01.27.>

가. KFA 풋살 D급 지도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2026.01.27.>

나. FK리그에서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사람 <개정 2026.01.27.>

다. KFA D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동 자격 취득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기간 : 6일(52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7조 (AFC 풋살 Level 2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AFC 풋살 Level 2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7.>

1. 신청요건 : AFC 풋살 Level 1 자격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기간 : 7일(72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18조 (AFC 풋살 Level 3 지도자 교육 및 자격부여)

AFC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19조 (KFA Fitness 지도자 교육 및 자격부여)

KFA Fitness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요건 : AFC C급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기간 : 6일(4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20조 (AFC Fitness Level 1 지도자교육 및 자격부여)

AFC Fitness Level 1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요건 : AFC B급 및 KFA Fitness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강 신청서 양식에 의한 서류심사 안내요강에 따른 수강생 선정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기간 : 10일(8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21조 (AFC Fitness Level 2) 지도자교육 및 자격부여)

AFC Fitness Level 2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요건 : AFC Fitness Level 1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01.27.>
2. 교육 기간 : 15일(12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제22조(자격 등급별 합격 결정 등)에 따른다.



제22조 (자격 등급별 합격자 결정 등)

- ① 각 급별 교육과정에 따른 실기, 이론, 논문, 경기 규칙 등의 평가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6.01.27.>
- ② 위 1항의 평가에서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재시험의 기회가 부여되고, 재시험은 재시험 결과 수령 이후 2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③ 위 1항의 평가에서 총점 60점 미만을 획득한 사람은 불합격 처리된다. <개정 2026.01.27.>
- ④ 전체 교육기간 중 10% 이상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을 방해한 수강생에 대하여 퇴소조치하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부상, 공식 대회 및 경기 출전으로 인하여 10% 이상 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강사와 협회의 사전 승인에 따라 재강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강습은 2년 이내에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26.01.27.>
- ⑤ 강사는 강습회별 성적 상위 20% 이내에 한하여 성적 우수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 기관 발급 자격증)

FIFA, 대륙축구연맹 또는 각국 축구협회 주관의 지도자 교육 과정에 참가하여 발급받은 공인 자격증은 AFC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동등한 자격 또는 임시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보수교육

제24조 (정의)

보수교육은 협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지도자의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AFC 지도자교육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5조 (대상)

보수교육은 협회 발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 (보수교육 이행기간)

지도자 자격 등급별 보수교육 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차년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 (보수교육 인정 범위 및 이수 기준)

- ① 보수교육 의무이행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할 점수는 별표1과 같다.



- ② 위 1항의 점수 산정 항목으로 인정하는 교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컨퍼런스 및 세미나
 - 2. 지도자 강습회
 - 3. 온라인 교육
 - 4.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 활동 등
- ③ 위 2항의 교육 항목에 대한 점수는 매년 협회가 별도 공지한다.
- ④ 그 외의 보수교육의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교육의 권한 및 위임)

- ①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은 협회에 있다.
- ② 보수교육은 협회, 시도협회 또는 전국연맹이 개최하거나 협회의 승인을 득한 단체가 개최할 수 있다. 시도협회, 전국연맹 또는 승인단체가 보수교육의 개최를 희망할 경우 시도협회, 전국연맹 또는 승인단체는 협회에 서면으로 사전 개최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③ 보수교육 종료 후 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승인단체는 협회에 서면으로 보수교육 개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자격의 갱신 및 정지)

- 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별표1에 기재된 기간만큼 자격의 효력이 연장된다. <개정 2026.01.27.>
- ② 별표1에 기재된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26.01.27.>
- ③ 정지된 자격은 지도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의 자격 재부여 절차를 거쳐 자격효력이 회복된다.

제4장 지도자 교육강사(Instructor)

제30조 (지도자 교육 강사의 정의)

지도자 교육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라 함은 AFC와 협회로부터 강사 자격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받아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1.27.>

제31조 (강사의 임명)

- ① 강사는 협회의 추천에 의해 AFC가 승인하거나 협회가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01.27.>

- ② 협회는 필요시 특정 전문 과목 또는 과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부에서 초빙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01.27.>

제32조 (강사 파견, 육성 및 보수)

- ① 협회는 임명된 강사 또는 초빙강사에게 수당과 더불어 숙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명된 강사 또는 초빙강사의 활용에 대한 사항(파견, 육성 및 보수의 지급 등)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부칙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0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2009. 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지도자의 등급 및 지도대상)중 풋살 지도자에 관한 사항은 2017년부터 시행하며, 제25조(보수교육 인정 범위 및 이수기준) 관련 본규정 시행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6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8. 5.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지도 대상별 최소자격기준)중 피트니스자격관련 사항은 최소자격기준표에 별도 표시된 시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AFC B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1항, 제10조 (AFC A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1항, 제13조 (AFC GK B급 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1항의 신청요건 중 지도경력 보유 필요에 관한 사항은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1.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6.01.27.>

자격증 종류	의무 이행 기간	의무 이행 점수
AFC P급	3년	50점
AFC A급		40점
AFC B급		30점
AFC C급		20점
KFA D급		10점
AFC Fitness Level 2		40점
AFC Fitness Level 1		30점
KFA Fitness		20점
KFA GK C급		20점
AFC GK B급		30점
AFC GK A급		40점
AFC 풋살 Level 1		20점
AFC 풋살 Level 2		30점
AFC 풋살 Level 3		40점



별표2.

구분		감독	코치	GK코치	피지컬코치	
동호인 (8세이하포함)		KFA D	KFA D	없음	없음	
초등, U12전문		AFC C	KFA D	KFA GK C	KFA Fitness	
중/고등, U18전문		AFC B	AFC C	KFA GK C	KFA Fitness	
풋살	성인	AFC 풋살 Lv.1	없음	없음	없음	
	FK 리그	AFC 풋살 Lv.2	AFC 풋살 Lv.1			
대학,성인 전문축구팀		AFC A	AFC B	AFC GK B	AFC Fitness Lv.1	
K리그 1, 2		AFC P	AFC A	AFC GK A	AFC Fitness Lv.1	AFC Fitness Lv.2 (2027년부터적용)
남녀 U17		AFC A	AFC A	AFC GK B	AFC Fitness Lv.1	
남녀 U20		AFC A	AFC B	AFC GK A	AFC Fitness Lv.1	
남녀 A대표팀 남자 U23		AFC P	AFC A	AFC GK A	AFC Fitness Lv.1	AFC Fitness Lv.2 (2027년부터적용)

단, AFC 규정에 의거하여 AFC P급, A급, GK A급, AFC Fitness Level 1, 2 자격 취득을 위한 지도자 교육에 입과한 지도자는 임시 자격을 부여받아 K리그1, 2 및 각급 대표팀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입과한 지도자 교육을 2년 이내 수료하여 정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